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108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4년 12월 일 (제336회) |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안 자 | 의회운영위원장 |
| 제안연월일 | 2014년 12월 18일 |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08 |
|----------|-----|

제안연월일 : 2014년 12월 18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조정(안 제3조)
 - 월정수당을 월 2,640,000원에서 월 3,000,000원으로 조정함
- 적용시점 :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- 예산조치 : 의정비 인상분 13,392만원 추가소요
(2015년 제1회 추경시 반영)
- 기 타 :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5년도 의정비 결정통보공문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월 2,640,000원”을 “월 3,00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3조(월정수당) ①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<u>월 2,6</u> <u>40,000원</u>으로 한다. 단, 1월 미 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② (생 략)</p> | <p>제3조(월정수당) ① ----- ----- <u>월 3,0</u> <u>00,000원</u>----- . ----- ----- . 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.>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., 2014.6.3.>

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

- 함께하는 충북 -



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



수신자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의회의장
(경유)
제목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통보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6648 |
| 등록일자 | 2014. 11. 27 |
| 처리과 | 총무담당관실 |

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불임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향후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1부. 끝.

| 담당자 | 총무팀장 | 공무팀장 | 의정비팀장 | 의정비팀장 | 의정비팀장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박종복 | 김민서 | 김민서 | 김민서 | 김민서 | 김민서 |

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

부위원장 김하린 위원장 김민서

협조자

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- / (2014. 11. 26) 접수
우 360-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82 (문화동)
전화 043) 220-2122 /전송 043)220-2119 /

()
<http://www.cb21.net>
/ 공개

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

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

□ 의정비 결정

- 2015년도 의정비 : 년 5,400만원
 - 의정활동비 : 년 1,800만원 (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4에 따름)
 - 월 정 수 당 : 년 3,600만원
 - 여 비 :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따름.
-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의정비 : 동결

□ 의정비(월정수당) 인상의 전제 조건

- 도지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된 소위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관행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
- 도의회 의장은 공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
 - 법적 근거가 없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요구 관행은 '15년부터 폐지하고
 -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및 준수, 의정활동평가제도 도입, 해외연수 제도 개선 등은 제10대 도의회 회기동안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

2014. 11. 26.

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창기

김창기